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9-565호(2019. 11. 2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기안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09

(주)우방 대표이사 (인)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위 치	보 상 내 역
기안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공공공지] 조성사업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	○ 토지,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며, ○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2. 보상계획

- 1)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 후 개별통지(다만, 관할 시·도지사 및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 보상
- 3) 보상시기 : 2020. 02월경(추후 개별통보 예정)
- 4)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업 시행자 : 주식회사 우방 대표 송동근

4.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 03. 30 까지

5.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1) 기 간 : 2019. 12. 09 ~ 2019. 12. 23(15일간)

2) 장 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TEL: 031-369-2467)

➢ 보상사업소 : 경기도 평택시 죽백5로33(죽백동, 평택세무타워201호)T:031)681-9091, F:031)686-6117

6. 열 랐 공 고 : 토지 및 물건조서 등 열람 (따로 붙임)

7.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